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9. 29 선고 2021가단700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대리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훈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4. 28.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1년 금 제2468호 공탁금 95,000,000원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그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 1)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고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 2) C는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1995. 10. 28. C와 혼인신고를 한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발생

- 1) 원고와 C는 2017. 3. 중순경 C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D'의 운영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기한 2018. 3. 15.까지, 보증금액 9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E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이 2020. 3. 13.까지로 연장되었다.
- 2) 원고와 C는 2017. 3. 중순경 C가 E으로부터 'D'의 운영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기한 2018. 3. 15.까지, 보증금액 42,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E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금액이 38,25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20. 3. 13.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 3) C는 2019. 10. 21.부터 E에 대하여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2. 12. 대출금 이자 연체에 따른 신용보증사고 발생이 통지되었다. 원고는 2020. 2. 28. E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가 연체한 원리금 합계 135,097,4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20.경 수원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합계 135,353,117원(= 위 대위변제금 135,097,412원 - 회수금 84,700원 + 확정손해금 17원 + 대지급금 340,388원) 및 그 중 135,012,712원에 대한 2020. 2. 28.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0차전7923호), 위 법원은 2020. 6. 10. 원고의 C에 대한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6. 30.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1) C는 2017. 4. 22. F과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29.부터 2019. 4. 28.까지로 정한 전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는 2019. 4. 2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계약자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이하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F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3. 2.부터 2021. 3. 1.까지로 정한 2019. 4. 28.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F은 2021. 3. 5. 수원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C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을 공탁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년 금 제2468호).

라.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의 자력

1)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F에 대한 95,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다.

2)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의 소극재산으로는 E에 대한 100,000,000원 및 4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갖는다.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무자력인 상태에서 상황에서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F이 공탁한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대위변제를 한 2020. 2. 28.에 성립한 것인데, 이 사건 양도계약은 2019. 4. 28.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2) C는 2019. 4. 28.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설령 무자력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가 무자력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3) C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실질적으로 C와 피고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C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의 전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4.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 28.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로 인하여 구상금 135,353,117원(= 위 대위변제금 135,097,412원 - 회수금 84,700원 + 확정손해금 17원 + 대지급금 340,388원) 및 그 중 135,012,712원에 대한 2020. 2. 28.부터의 지연손해금채권을 갖는다.

2)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C가 운영하는 'D'의 운영자금 대출을 위하여 체결된 점, ② C는 2016. 3. 2.경부터 I으로부터 화성시 J 지상 창고 및 용접기, 작업조방 등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¹⁾, 차임 월 1,500,000원에 임차하여 'D'를 운영하였는데, 2018.

11.부터 2019. 4.까지의 차임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C와 I은 2019. 4. 말경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C가 I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하였으며, 미지급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상계하였던 점, ③ 이로 인하여 C가 운영하는 'D'는 2019. 4. 말경부터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19. 12. 13.에 이르러 폐업신고를 한 점, ④ C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어떠한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⑤ C는 2019. 10. 21.경부터 E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9. 12. 10.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담보되는 E에 대한 채무와 각종 금융기관, 카드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유로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수원지방법원 2019개회177609호) 등이 인정된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체결되어 있었다. C는 2019. 4. 말경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반환하여 주어,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는바, 'D' 운영자금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2019. 4. 28.경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C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와 피고와의 관계,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 및 그 대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수익자의 악의

1) 이 사건 양도계약에 포함된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그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양도계약에 포함된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C 사이에 2019. 4. 28.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5. 반환의 방법 및 범위

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F이 2021. 3. 5. 피고 또는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을 수원지방법원에 혼합공탁(=채권자불확지공탁 + 집행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C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와 피고의 실질적인 공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에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으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등 참조), C가 2017. 4. 22. F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C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C와 피고의 공유에 해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C와 피고가 1995. 10. 28.부터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양도계약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그로 인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23,000,000원 부분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시한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은 압류금지재산이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일 뿐 압류금지재산이 사해행위로 처분되었을 경우 원상회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아닌 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내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C에게 원상회복되어도 C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할 수 있는 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부분은 그 성질상 분리되어 처분이전될 수는 없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보증금 중 압류금지 부분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하경

[별지 목록]

채권의 표시

임차인 과 임대인 사이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호에 관하여 보증금 95,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
한 의 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채권 95,000,000원, 끝.

1) C와 I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0호증(확인서)에 C가 I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0,000원만 납부한 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